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의안번호	제 2012-399 호
의 결 연월일	2012. 08. 30. (제 289 회)

의 결
사 항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 설 · 강 화 규 제 심 사 안

제 출 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제출연월일	2012. 08. 30.

목 차

I. 규제 심사(안) 개요	1
□ 요 약	1
II. 규제심사안	2
1.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2

I. 규제 심사(안) 개요

□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p>1. 간호조무사 자격인정(간호조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p> <p>* 강화 * 시행규칙 제4조제1항 2항</p>	<p>○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요건</p> <p>- 고등학교 이상 학력이 인정되는 자 중 국공립 간호조무사 양성소,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필요한 교육을(학과 740시간, 실습 780시간) 이수한 자(4조①항1호)</p> <p>- 전문계 고등학교 간호관련학과 이상 학력수준이 인정되는 자 중 필요한 교육을(학과 740시간, 실습 780시간)을 이수한 자(4조①항2호)</p> <p>-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간호관련학과를 졸업한 자(4조②항)</p>	<p>□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해석 변경에 따른 규정 명확화</p> <p>-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p> <p>1) 간호 관련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자</p> <p>2)고등학교와 같은 학력수준을 지닌 자 중 평생교육시설,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p> <p>3)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p> <p>□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외국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어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응시자격 부여</p>

Ⅱ. 규제심사안

1.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①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해석 변경에 따른 규정 명확화

○ (내용)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

- 간호 관련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고등학교와 같은 학력수준을 지닌 자 중 평생교육시설,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
-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 (개정 취지) 현행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 자격 규정 해석에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함

- 고등교육기관(전문대학, 대학)을 통한 간호조무사 양성 가능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 차이 발생

* '11년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12년 (경기도 평택 소재) 국제대학에서 간호조무전공 신설 40명 신입생 모집

대상 조문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에 대한 해석 차이	
	우리부 해석	법제처 해석
제4조(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제1항제2호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간호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간호학과'에 한해 응시자격 인정	- 전문대학 내에 '간호조무양성과'를 개설하고, 해당과 졸업자에게 교과부장관이 제4조1항2호에서 규정고 있는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응시자격 인정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역할과 기능이 다르고, 그에 따라 양성 체계, 자격·면허관리체계 등이 상이하야 별도의 양성체계 개편 전까지 현 중등교육 중심의 양성체계 유지(새로운 역할·기능 부여와 함께 고등교육은 장기 검토)

* 기존 법령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과 동일

-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외국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어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응시자격 부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①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후단 신설>	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① ----- ----- ----- 자로서 각 호의 본문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

	<p>육기관” 이라 한다)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교육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 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 이 경우 실습 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 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p>
<p>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이하 “학원등” 이라 한다)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원등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 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p>	<p>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관련학과 졸업자(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자를 포함한다)</p>
<p>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의 전문계고등학교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p>	<p>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p>

<p>(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 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p>	<p>내에 졸업이 예정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하 “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자”라 한다)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이 설치된 곳에 한한다)의 간호관련학과 졸업자</p>
<p>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p>	<p>3. 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자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이수자</p>
<p><신 설></p>	<p>4. 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호조무사양성학원 이수자</p>
<p>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간호관련학과를 졸업한 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제1호의 학과교육 및 실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자를 포함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p><u>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u></p> <p>3. <u>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u></p>
--	---

②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03277			
	규제사무명	간호조무사 자격인정(간호조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주된규제	
	성격별분류	경제적규제/진입	유형/구분	인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제안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처리기관	시.도	
	작성자 인적사항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원중, 의료자원정책과 고득영			
4. 근거법령명 등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국제대학	1개(학생 정원 40명)	입법예고	-개정안 반대 -부득이한 사유로 개정 시 이 규정 시행당시 간호조무과가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거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마련
	피규제자	간호조무사, 특성화고, 간호학원	특성화고: 32개소 간호학원: 전국 480개소	입법예고	-대한 간호조무사 협회: 개정안 반대 ·전문대학 교육을 통한 간호조무사의 질 향상 필요 -특성화고, 간호학원: 개정안 찬성 ·고졸학력자 취업 장려 정책과 배치, 일선 간호현장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간 업무 영역 혼란 발생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 한 것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제도를 위해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				

<p>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요건 - 고등학교 이상 학력이 인정되는 자 중 국공립 간호조무사 양성소,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필요한 교육을(학과 740시간, 실습 780시간) 이수한 자(4조①항1호) - 전문계 고등학교 간호관련학과 이상 학력수준이 인정되는 자 중 필요한 교육(학과 740시간, 실습 780시간)을 이수한 자(4조①항2호) -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간호관련학과를 졸업한 자(4조②항) - 신설(강화)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해석 변경에 따른 규정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간호 관련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고등학교와 같은 학력수준을 지닌 자 중 평생교육시설,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 3)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외국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어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응시자격 부여
<p>8. 규제체계도</p>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명확화

○ 현행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 자격 규정 해석에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함

- 고등교육기관(전문대학, 대학)을 통한 간호조무사 양성 가능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 차이 발생

* '11년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12년 (경기도 평택 소재) 국제대학에서 간호조무전공 신설 40명 신입생 모집

-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① 간호관련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② 고등학교 수준의 학력인정자 중 평생교육시설,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
③ 전문대학·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자로 명시적으로 나열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규정한 현행 규칙 제4조제1항 제3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이는 고등학교 학력을 요구하는 다른 응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명확화>

- 규제 신설·강화라기 보다 불명확한 해석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현행 제도 유지를 위한 개정임
- 간호인력 간(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영양보호사) 역할분담의 혼란과 그에 따른 상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
 - 현재 간호인력 양성체계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간에 수행해야 할 역할에 따라(독립적 간호, 간호보조, 영양보호 등) 그에 적합한 양성 절차와 자격요건을 정교하게 구조화하고 있음
 - 따라서 간호영역에 종사하더라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병원 내 업무 및 처우(임금 등)에 있어 엄격한 차이 존재
 - 또한, 간호사는 의료인으로 대학의 정원배정 및 교육과정 평가를 통해 적정인력 배출을 위한 수급관리 실시
 - * 현재 간호조무사는 시·도지사 면허로 간호학원 등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 과정을 통해 양성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역할 및 양성·관리체계 비교>

	전문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역할·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급 수준의 전문가적 간호 제공 * 가정, 보건 노인 등 13개 전문 분야로 자격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보조 및 간호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보조 업무 * 급성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대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상 실무경력을 지닌 간호사 중 대학원 전문간호사 교육 이수자(석사학위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 3년 또는 대학 4년 · 교과목 학점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계고 및 고졸자 단기 양성과정(학원) 등 · 740시간 이론 및 780시간 실습 교육 이수
면허·자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부장관이 부여하는 전문간호사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 복지 부 장 관 이 부여하는 간호사 면허 (의료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가 부여하는 간호조무사 자격
수급·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및 정원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대학 정원 배정 및 '간호평가원'의 교과과정 질 관리 (자율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설비(교구) 기준만 개략적으로 규정 (시·도 조례)

○ 구조 변경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역할·기능 변경, 양성체계 및 자격관리 체계 개혁 필요

- 간호인력 전반에 대한 제도 개편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대학(3년제) 간호사와 전문대학(2년제) 간호조무사 간 양성과정이 유사해질 경우
- 병원급 간호등급제 내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대체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관련 단체 간 갈등 격화가 우려됨

□ 간호조무사 동일 자격 내 학력차가 커져 통일적인 역할과 기능 설정 및 관리체계에 혼란 발생 가능

○ 간호조무사 간 양성 기관에 따라 I·II 급 분리, 새로운 역할 부여 요구 등 갈등 발생 우려

* 특성화고등학교(연간 2천3백여명) 및 간호학원 양성인력(연간 4만8천여명)

- 현해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체계와 전문대학에서의 학점관리 체계가 상이해 관리 불가
 - * 개인별 관련 교과목 이수 현황 및 학점별 이수 시간 확인 필요 등
- 또한, 중등교육(고등학교) 및 단기과정으로 가능한 자격을 고등교육(전문대학) 양성체계로 변경할 경우 자원 낭비 및 학력 인플레이션 조장
- ☞ 간호인력 간 역할에 대한 혼란과 상호 갈등 방지를 위해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 관련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 추진

<외국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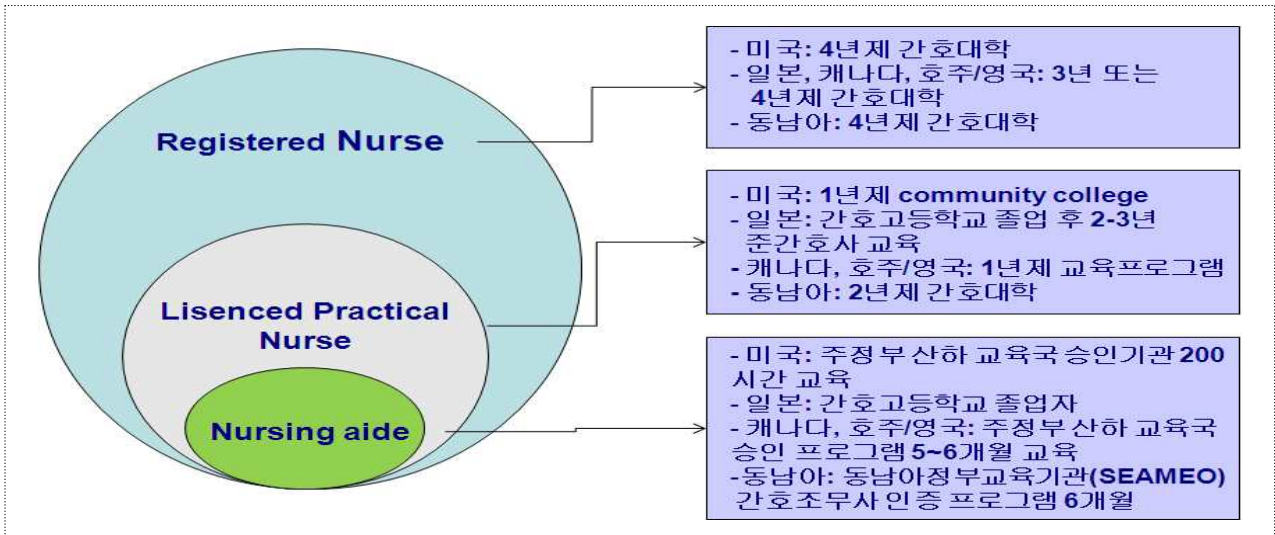
-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다른 응시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학력 기준(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을 설정할 필요
- 동일한 기준에서 양성된 간호조무사의 배출을 유도하여,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도모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대안의 검토
 - 시행규칙 개정은 자격시험의 응시자 자격 규정 해석에 대한 논란을 막고 간호인력의 양성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임
 - 현재까지 일관되게 유지해 온 간호조무사 역할과 양성 체계에 대한 우리부 정책방향과 간호인력 양성에 대한 타 국가 사례를 고려할 때 별도의 대안을 상정하기는 어려움

- *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전공 설치는 ‘간호조무사자격관리 제도개선 TF’에서 장기검토과제‘로 합의(’09.7월)한 바 있음

< 간호인력 양성 관련 타국가 사례 >



- *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의 분류(LPN 또는 NA)에 대해 관련자간 주장 상이

□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 (규제의 비용) 현행 체계 내에서 수행하는 행정적인 절차로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규제의 편익)
 - 전문대학에서 경쟁적으로 간호조무관련학과를 신설, 학생 배출 시 발생할 수 있는 간호사와의 역할 혼란 등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
 - * 현재도 간호조무사는 현장에서 업무범위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병원의 정원규정 신설 및 간호 등급제 포함, 복지부장관의 면허 부여의 필요성 주장
 - 단기과정으로 가능한 자격을 고등교육(전문대학)으로 양성함에 따른 자원 낭비 및 학력 인플레이 등 사회적 비용 절감 가능
 - * 소요금액 비교 : 전문대(1,360만원), 학원(240만원)

다.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법령 해석 상의 논란을 방지하고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역할을 명확히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한 규제임
- 타 국가에서도 간호인력 간 자격에 따른 양성 체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 외국의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에게도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응시자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규제임
- 또한, 외국의 면허 취득자에게도 다른 응시자와 동일하게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다른 보건의료인의 응시 자격과도 부합하는 기준임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생략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또는 대학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제7조(간호사 면허)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2) 이해관계자 협의

□ 관계 부처 협의: 교육과학기술부('11년 7월~'12년 2월 지속 협의)

○ 의견: 개정안 찬성 ('12. 2.3, 관련 공문 송부)

-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해야 하는 전문대학에서 고등학교 수준의 자격에 해당하는 조무사 과정을 정식 과정으로 개설하여 자격을 주는 것은 전문대학 설립 취지와는 불일치
- 이를 방치할 경우 학생 선발위기에 있는 일부 전문대학들이 무분별하게 관련 자격과정을 개설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이는 곧 학위제도와 연결된 교육제도의 불안정성을 급증시킬 우려

□ 입법예고

○ 기간 : 2012.1.20 ~2.10

○ 의견제출 기관 및 의견

- (찬성) 간호협회, 특성화고 및 전국보건간호교과연구회, 간호조무사 교육자 협회 등
- 간호조무사 양성체계의 설계 및 전환은 관련 TF에서 장기검토 과제로 합의한 만큼 간호보조 인력의 업무구분 명확화가 이루어진 후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
- 간호조무사 직종까지 대학 교육으로 양성하는 것은 'MB 정부의 고졸 학력자 취업 장려 정책'과 배치

- (반대) 국제대학, 간호조무사협회, 개원의협의회, 중소병원협회, 일부 지자체(경상북도, 전라북도, 제주도)
 - 전문대학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통해 간호조무사 질 향상 도모 필요
 - 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정원 규정화, ② 간호등급제 포함, ③ 자격신고제를 통한 인력관리 및 보수교육 강화, ④ 인력수급에 대한 복지부의 정원 통제 등 간호사와 동등한 수준의 간호조무사 처우보장을 위한 각종 제도 도입을 위해 전문대학을 통한 간호조무사 양성 필요
- 결과 : 관련 단체 간 이견이 큰 사안으로 반대의견의 경우 입법취지와 전면 배치되어 반영이 어려움

<제출의견 현황>

제출처	수정제출안	제출의견	검토의견
간호사협회	<원안 찬성> 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간호조무사 양성체계의 설계 및 전환은 간호보조 인력의 업무구분 명확화가 이루어진 후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 - 전문대학을 통한 간호조무사 양성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제도개선 TF」에서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결정 - 간호보조 인력의 역할 정립과 그에 적합한 양성교육 과정의 정비 및 질 관리가 우선 전제	<반영> 개정안 취지와 동일
간호조무사 협회	<수정> 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①_____ 1. _____간호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모든 직종의 자격제한 요건을 규정하는데 있어 「~ 고등학교 졸업이상자, ~ 전문대학 졸업이상자」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으로 「~ 졸업자」	<미반영>

제출처	수정제출안	제출의견	검토의견
	<p>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자(간호조무사....이하 동일)</p> <p><수정> 2.-----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자로서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간호관련학과 졸업자</p> <p><수정> 3.고등학교 졸업자이상자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이수자</p> <p>4.고등학교 졸업자이상자로서 '학원의-----'</p>	<p>로 제한요건을 규정하는 사례는 없는 바, 이는 간호조무사 자격요건을 '고졸'로 못박고자 하는 의도로 상식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규정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에 대한 간호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학력수준을 고려할 때 그들에 대한 진료보조 및 간호보조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간호조무사는 전문대 이상에서 양성되어야 함에도 '고졸'로서 응시자격을 하향, 전문대 이상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 <p>○평생교육법의 입법취지는 성인 교육 기회 확대와 고등교육 수준으로 국민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열린교육임에도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평생교육시설 졸업자로 제한한다는 것은 평생교육법 취지에 정면 위배되는 정책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응시자격 부여 필요 <p>○현재 간호학원 입학생들의 60%이상이 전문대졸 이상으로 간호조무사 직종은 대졸 실업자들의 경제활동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바, 응시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제한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음.</p>	<p><미 반영></p> <p><미 반영></p>
국제대학	<p><수정> 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① _____</p>	<p>○헌법제31조제4항에 의거 대학의 자율성 및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교육받을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호조무사양성을 고등</p>	<p><미 반영></p>

제출처	수정제출안	제출의견	검토의견
	<p>1. _____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자(간호조무사...이하 동일) ② _____ _____</p> <p>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간호과 또는 간호조무과를 졸업한 자</p> <p>부칙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간호조무과가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거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고 졸업자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을 부여한다.</p>	<p>학교과정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됨</p> <p>○ 전문대학의 설치목적은 「고등교육법 제47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사회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문대학에 특정학과 설치를 제한해서는 아니됨</p> <p>- 또한,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해서는 전문대학에서도 반드시 간호조무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제한해서는 아니됨.</p> <p>○ 법령을 개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p> <p>- 현행규정을 그대로 두든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령을 개정 하더라도 현행 규정에 의거 설치한 대학이나 그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의 경과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함</p>	
대한개원의 협회	<p><수정> 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① _____</p> <p>1.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자(간호조무사...이하 동일)</p>	<p>○ 국민에 대한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교육이 전문대학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제한해서는 안됨</p> <p>-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간호관련학과를 간호학으로 축소하는 것은 1차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의 간호인력에</p>	<미반영>

제출처	수정제출안	제출의견	검토의견
대한중소 병원협회	<p><수정> 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①1.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자(간호조무사 ...이하 동일)</p> <p>2. '초중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u>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자</u>(간호조무사~동일) 또는 ---- 졸업자 <u>수준 이상의 학력</u>이 -----</p> <p>3. 고등학교 졸업 <u>이상의 학력</u>인 정자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이수자</p> <p>4. 고등학교 졸업 <u>이상의 학력</u>인 정자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호조무사양성학원 이수자</p>	<p>대한 질적 향상을 저해</p> <p>○국민에 대한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선 간호조무사 교육이 전문대학○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등학교로 제한하면 아니됨</p> <p>○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이 활성화되고 특성화 대학과 학과도 분화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인력이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적기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도 취득 및 직업선택의 다양화를 위해 취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함</p> <p>○다양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학력의 제한을 과하게 두는 것은 간호학원의 존립을 위협할 수도 있으며, 특정 직종의 인력 수준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초래</p>	
한국간호조무사 교육자협회	<p><원안 찬성> 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p>	<p>○기 운영되고 있는 간호조무사 교육체계가 흔들릴 우려가 있고 생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국 500여 학원에 충격을 줌</p> <p>- 간호사도 3년제 간호전문대학을 4년제로 간호학과로 일원화 되었고, 현재 지도·감독도 못하는 상황이므로 간호조무과 신설 반대</p>	
전국보건간호 교과연구회	<p><수정> 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p>	<p>○전세계적으로 6~10개월 이론과 실습교육을 마친 후 취득 체계로</p>	

제출처	수정제출안	제출의견	검토의견
	<p>시자격)①-----</p> <p>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는 삭제</p> <p>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보건간호과를 졸업한 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는 삭제</p>	<p>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충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육의 목적과 위배되며, 대학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 소지 있으므로 신설 불가 	
전국간호학원협회	<p><원안 찬성></p> <p>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p>	<p>○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전문대학이 간호조무사의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로 간호조무과를 신설하려고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년 ~'09년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제도화 추진T/F에서 논의결과 일반대학 간호관련 학과 이수 불가능 하다고 결론 - 동시에 간호보조인력 양성시장을 침탈하는 것은 교육시장의 질서를 파괴하는 비도덕이고 불공정한 행동으로 전문대학의 역할정립과 발전을 위해서 불가 	<p><반영></p> <p>개정안 취지와 동일</p>
특성화고 (경기여상 등)	<p><원안 찬성></p> <p>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p>	<p>○간호조무사 직종까지 대학 교육으로 양성하는 것은 'MB 정부의 고졸 학력자 취업 장려 정책'과 배치되며 '대학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 입시생 및 학부모를 우롱하고 속이는 것'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개정안 찬성</p>	<p><반영></p> <p>개정안 취지와 동일</p>

○ 외국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관련 의견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개정안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응시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규제 집행의 실효성 확보